

1 사업지원금 운용 원칙

□ 사업지원금 용도

- 선진지 견학,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필수)
- 우수 단체의 지속적 역량강화를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 단체의 운영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사업지원금 집행 기간

- 지원금은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집행 완료해야 함
- 정산보고서는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회계관리

□ 지원금 전용 통장(계좌) 및 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다른 사업과의 계좌 혼용 불가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 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개인이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 불가
 -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회수 대상

□ 사업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 예산 집행은 지원금 통장에 입금된 시점부터 집행 가능

- 지원금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종 정산 시 환수 조치함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발표심사 시 제출한 ‘사업지원금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예산 집행 시 해당 금액을 환수함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금 총액의 30% 이상 예산변경 시,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산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 내부거래 금지

- 지원금 집행 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 조치함

□ 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 집행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적 및 정산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지원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함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지출 불가 항목

○ 용도 외 사용금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자산성 물품(기계, 비품, 장비 등)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물품
- 단체 소속 임원에 대한 비용(강의, 출연, 인건비 등)
- 기념품 제작, 회원작품집(사진, 책자, 잡지 등),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 기부금, 진료비, 시상금, 경품, 단체 부담금(협회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일회성 캠페인, 동호회, 친목회, 향우회,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관광성 사업 등

□ 사업 비목

①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현수막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강사료 등
- 차량 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체험료, 문구비, 인쇄비 등

②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식비(다과비 포함)는 1인 1식 15,000원 이내에서 편성함

③ 강사수당(외부)

-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강사비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지급한도액 (기본1시간/추가시간당)	비 고
1등급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위원 4. 컨설턴트(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 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체육, 기능 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9. 기타 위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200/120	- 시내여비: 정액 20 - 시외여비 · 교통비: 실비 · 식 비: 6 (1식) · 숙박비: 25 (1박)
2등급	1.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5. 일반 컨설턴트, 기초의회의원, 세무사, 노무사 6. 연구기관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40/80	- 강사가 자차 이용 시 '시내여비' 기준 적용 - 강사가 대중교통 이용 시, '시외여비' 지급기준 적용 - 단, 출장 시간이 4시간 이내일 경우 시내여비 및 시외여비 중 식비를 50%만 지급
3등급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1등급, 2등급 이외의 강사	90/60	
보 조 강 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④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함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소모성 물품은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로 편성함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항목	지급기준	증빙자료												
행사운영비	▶ 여행자 보험 등 견학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 교육(탐방)을 위한 시설 입장료, 차량 임차료 ▶ 그 외 다른 항목에 포함하기 어려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	▶ 카드결제 시 -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 계좌이체 시 -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 결과보고서												
식비 (다과비 포함)	▶ 1인 1식 15,000원 이하	▶ 카드결제 시(상동) ▶ 계좌이체 시(상동) ▶ 참석자등록부 ▶ 결과보고서												
강사수당	▶ 강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책정	▶ 강사프로필 ▶ 참석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석 확인 서명 포함 ▶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교육 결과보고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소모성 물품구입비 허용·불가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허용 예시</th><th>불가 예시</th></tr> </thead> <tbody> <tr> <td>베이킹</td><td>빵틀(소형 또는 1회성), 소형 쇼케이스 등</td><td>오븐, 믹서 등 자산성 기기</td></tr> <tr> <td>목공</td><td>못, 목공용 풀, 붓, 줄자, 페인트 등</td><td>전동 공구, 장기 보관용 도구 등</td></tr> <tr> <td>안전 위생</td><td>마스크, 위생 장갑 등</td><td>안전 장비 등</td></tr> </tbody> </table>	구분	허용 예시	불가 예시	베이킹	빵틀(소형 또는 1회성), 소형 쇼케이스 등	오븐, 믹서 등 자산성 기기	목공	못, 목공용 풀, 붓, 줄자, 페인트 등	전동 공구, 장기 보관용 도구 등	안전 위생	마스크, 위생 장갑 등	안전 장비 등	▶ 카드결제 시(상동) ▶ 계좌이체 시(상동) ▶ 물품검수조서 ▶ 물품납품사진
구분	허용 예시	불가 예시												
베이킹	빵틀(소형 또는 1회성), 소형 쇼케이스 등	오븐, 믹서 등 자산성 기기												
목공	못, 목공용 풀, 붓, 줄자, 페인트 등	전동 공구, 장기 보관용 도구 등												
안전 위생	마스크, 위생 장갑 등	안전 장비 등												

※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내용은,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 후 집행